

[별지 제114호서식] <개정 2024. 11. 14.> (앞쪽)

제 호
강사신분증
사 진
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)
(직 위)
(성 명)
○○자동차운전학원

54mm×76mm[보존용지(1종)120g/m²]

(주) 직위에는 학과교육 강사, 기능교육 강사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(뒤쪽)

신 분 증
주 소:
성 명:
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12조에 따라(학과교육 강사, 기능교육 강사)임을 증명합니다.
○○자동차운전학원 설립·운영자 직인
주 의
1. 근무시간 중에는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합니다.
2.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.
3. 퇴직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.
4.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.